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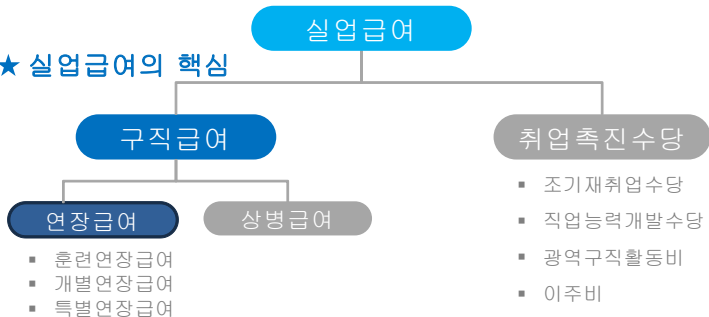
실업급여 제도

1. 실업급여 제도 안내
2. 실업인정 절차와 방법
3. 조기재취업수당 및 연장급여
4. 부정수급 및 Q&A

실업급여의 종류

실업급여는 크게 **구직급여**,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

★ 실업급여의 핵심



1-2 구직급여 수급 요건



3가지 요건을
모두 갖추어야
수급대상!

피보험단위기간

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

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

(또한, 일용근로자는 수급신청일 이전
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)

180일 이상

이직 사유

해고, 폐업, 계약만료 등
불가피한 퇴직

(단, 개인사정, 본인 귀책사유로
해고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)

비자발적
퇴직

적극적
구직활동

재취업 노력

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
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
적극적 구직활동 필요
(승선근무예비역, 환자 등
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)

1-3 구직급여 지급액 및 지급일수

지급액

최저임금의
80% 수준

1일 지급기준액

평균임금
의 60%

▶ 2019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최저 60,120원, 최대 66,000원 (8시간 근무기준)

지급일수

지급일수는 퇴직당시 **만 연령**과 고용보험 **가입기간**에 따라 상이

나이 \ 기간	1년 미만	1년~3년	3년~5년	5년~10년	10년 이상
50세 미만	120일	150일	180일	210일	240일
50세 이상, 장애인	120일	180일	210일	240일	270일

실업인정 의미 및 방식

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

적극적인 구직 노력 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

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이 필요!

적극적 재취업 활동 과

정해진 날짜에 출석(또는 인터넷 전송)

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!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지급 절차



■ 설명회 참석



■ 수급자격인정 신청서
■ 구직신청서

✓ 1차 실업인정교육 참석

■ 적극적 재취업활동 안내

✓ 별도의 재취업 활동 내용 제출 불필요

✓ 대기기간(7일)을 제외한 실업급여 8일분 지급

오늘

2주 후

1차
실업인정

✓ 인터넷 실업인정 원칙

✓ 구직활동 확인 후 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※2차 3차 실업인정방식 동일

4주 후

2차
실업인정

4주 후

3차
실업인정

①구직활동 (4주간 총 1회)

②집체실업인정교육 참석

※2차 3차 실업인정방식 동일

▶ 부당해고 관련 심사, 재심사, 행정심판 중에는 구직활동여부는 반드시
담당자 상담

4차, 5차 부터 고용센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개입!

✓ 방문 실업인정신청서 제출

✓ 재취업활동계획서 제출

✓ 구직활동 확인 후 실업급여
28일분 지급(90일은 26일분
)

✓ 실업인정신청서 제출

✓ 인터넷 또는 방문

✓ 구직활동 확인 후
실업급여 28일분 지급

4주 후

4차
실업인정

구직활동
(총 1회)

4주 후

구직활동
(총 2회)

5차
실업인정
이후

취업알선, 직업지도,
직업능력개발 등

지시 2회 이상

불이행자

실업급여 정지!

재취업 활동 유형

구직활동

사업체 방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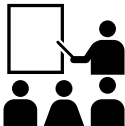
우 편



인터넷



직업훈련



집단상담프로그램 및 특강



창업준비



적극적 구직활동이란?

입사원서 제출, 면접 참가, 채용박람회 참석 등의 취업활동

- 현재 사람을 구하는 곳에서
- 채용절차를 정당한 권한 있는 분과 진행할 것

구직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

- 동일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구직활동
-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 문의
- 입사지원서 없이 모집요강만 출력하여 제출
- 직업소개소, 헤드헌터 업체에 구직등록만 함
- 면접을 본 것처럼 싸인만 받음
- 입사가 어려운 사업장에 지원



재취업 활동에 따른 자료 제출방법 (1)

사업체 방문



- 면접일자,
사업체명,
사업체 주소,
전화번호,
면접관 기재
- 담당자 **명함**,
면접확인서

우편



- 모집광고,
등기영수증

워크넷



- 내정보관리
입사지원관리->
구직활동내역->
본인 지원내역
워크넷 입사지원 구직활동
소정급여일수 120일 이하,
총3회 / 150일 이상, 총5
회 제한
- **입사지원 제한**
-2회 이상 형식적 구직활동

민간취업포털



- 모집요강,
취업활동증명서
- 이메일 이용 시
채용공고 및
보낸편지함 출력
(보낸날짜, 내용)

재취업 활동에 따른 자료 제출방법 (2)

직업훈련



- 수강증명서
(4주 30시간 이상
출결 확인)
- 출석부 사본

집단상담프로그램 및 특강



- 참가수료증
- 구직활동으로 인정
가능한 특강횟수는
담당자에게 문의

창업준비



- 창업을 위한 서류
(점포물색, 임대차
계약상당, 시장조사
활동, 프랜차이즈
내용 확인 등)

조기재취업수당

구직급여 수급 중 대기기간(실업신고일부터 7일)이 지난 후,
 소정급여일수의 $\frac{1}{2}$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하는 경우 지급

* 단, 자영업자는 수급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



-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$\frac{1}{2}$ 이상 남음
-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
- ✓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과 재취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필요

잔여
지급일수의
 $\frac{1}{2}$ 지급

지급
제외

- 최종 이직한 사업과 관련한 사업주에 재고용
- 실업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
-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



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
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연장, 구직급여의 70% 지급

* 단, 최저구직급여일액(최저임금의 90%)보다 적을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



지급대상

-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는 등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미취업
- 부양가족(18세 미만 65세 이상, 장애인 등)
- 직전 사업체 1일 임금이 7만4천원 이하
- 부부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하(소유건물X)
- 부부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(소유건물O)
-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담당자와 상담할 것

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용 및 조치

부정수급은 취업유무·소득 미신고, 이직사유 허위기재,

취득·**상실일** 허위신고, 구직활동 허위신고 등의

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함

부정수급 의심자 적발



- 전산망에 의한 자동경보 시스템 가동
- 실제 구직활동 여부 확인
- 사업장 정기 점검
- 신고자 포상금 제도
- 검찰 및 경찰 기획조사



부정수급 적발 시 조치

- 실업급여 지급 중지
-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(수급액의 2배)
- 1년 이하 징역 / 1000만원 이하 벌금
- 사업주 공모 시 연대처벌 및 형사고발

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



-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**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총2일 근로**
실업인정 당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사실 미신고
- ✓ 이후 건설회사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 2일을 신고하면서 적발되어
실업급여 전체금액 **112만원 반환**



- **인터넷 실업인정을 받던 중 재취업** 하였으나, 신고하지 않고
근무하면서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 후 실업급여 수급
- ✓ IP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자로 적발, **실업급여 전액 반환 및 추가징**

실업인정 관련 자주하는 질문

Q1

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하지 않으면?

실업인정을 받지 못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

단, 특별한 사유(면접, 채용시험, 직계존비속 경조사 등)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
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객관적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

* 본인 착오에 의한 불출석은 전체 실업기간 중 1회만 허용

Q2

취업하여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?

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, 팩스, 온라인 신고
등으로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청서 제출

Q3

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했다가 재실업 하면?

수급기간 내 다시 실업한 경우는 퇴사한 다음날부터

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 및 신고해야

남은 급여를 받을 수 있음.

단, 취업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취업한 일수만큼
소멸 (조기재취업수당 확인!)

4-3 심사 및 재심사 청구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, 실업의 불인정 ,
부정수급 처분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



심사청구

- 고용센터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
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청구

재심사청구

-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
9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청구

감사합니다



1차 실업인정일 방문 시

신분증, 통장 계좌번호

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!

1차실업인정 교육 9시30분 시작

교육일 9시20분까지 실업인정

고용지원관에게 출석하여

실업급여 수첩을 수령한 후

교육장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